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09.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8.3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 9. 6.
-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0. 9.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강 희 천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위탁기간, 위탁선정, 수강료 등 징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운영 및 조직(안 제4조)

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위탁할 수 있음

2) 수강료 등 징수(안 제9조)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회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3) 수탁자 선정(안 제10조)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함

4) 위탁계약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지도감독 (안 제13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속에서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 수강료 징수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0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 수강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0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올바른 영어독서 습관 형성과 언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2008년11월1일 서강대학교와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1월29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이 없으므로 이를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제9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